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결과자료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결과자료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 ▶ UN장애인권리협약 제40조에 의거, 각 당사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 ▶ 협약에 가입된 당사국, UN 기구, 국가인권위원회(NHRI), 시민사회단체 등이 회의 참여
- ▶ 2008년 제1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이하 당사국회의)부터 매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제13차 회기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온라인으로 진행 ※ 세부설명 참고자료(19p) 참조

1 회의 개관

가. 회의명: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나. 회의목적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현황 보고
-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장단이 선정한 현안에 대해 논의 진행

다. 회의주최: 제14차 당사국회의 의장단 및 유엔경제사회국(UN DESA)

라. 회의일시: 6. 15.(화) ~ 6. 17.(목), 3일간 개최 ※ 뉴욕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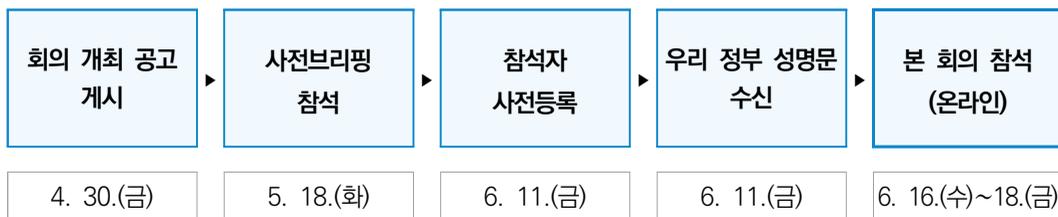
구분	뉴욕시간	한국시간	회의내용
1일차	2021. 6. 15.(화) 10:00 AM ~ 18:00 PM	2021. 6. 15.(화)~16.(수) 11:00 PM ~ 7:00 AM	- 개회 - 의장단 선출 - 일반토의 진행
2일차	2021. 6. 16.(수) 10:00 AM ~ 17:00 PM	2021. 6. 16.(수)~17.(목) 11:00 PM ~ 6:00 AM	- 원탁회의 1 진행
	①10:00~12:00 ②15:00~17:00		①23:00~01:00 ②04:00~06:00
3일차	2021. 6. 17.(목) 10:00 AM ~ 17:00 PM	2021. 6. 17.(목)~18.(금) 11:00 PM ~ 6:00 AM	- 원탁회의 3 진행
	①10:00~12:00 ②15:00~17:00		①23:00~01:00 ②04:00~06:00

※ 1일차의 경우 뉴욕 UN본부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 대표단은 2, 3일차만 참석 가능

마. 회의방식

- (1일차) 뉴욕 UN본부에서 현장회의 진행
 - 제14차 회기 의장단 및 협약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참여
- (2, 3일차)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웨비나'를 통해 온라인회의 진행
 - 당사국, 정부대표단, UN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바. 참석경과



2

회의 주제

가. 공통주제(Overarching Theme)

- 더 나은 재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욕구 충족, 권리실천 및 장애인이 겪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 : Building back better: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Meeting the needs, Realizing the rights and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나. 소주제(Sub-Theme)

- 원탁회의 (i)
 - 무력분쟁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
 - :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rmed conflict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 원탁회의 (ii)

-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포용

: Living independently,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원탁회의 (iii)

- 교육권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통합교육과 접근성의 어려움

: Right to education: challenges with inclusive education and accessibility during COVID-19

3

회의 세부내용

가. 원탁회의 1. 무력분쟁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

○ 공동의장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마테우즈 사코위츠 (Mateusz Sakowicz)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주유엔폴란드대표부
2	나와프 카바라 (Nawaf Kabbara)	시민사회 대표 / 레바논 '아랍장애인단체' 대표

○ 패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비렌드라 라즈 포카헬 (Birendra Raj Pokharel)	아빌리스재단 국가조정관 및 네팔 장애인권리및발전을위한액션(ADRAD) 창립자
2	마사 이사벨 후타도 그라나다 (Martha Isabel Hurtado Granada)	콜롬비아 평화고등판무관실 대인지리 방지 종합 액션그룹 부국장
3	리카도 플라 코데로 (Ricardo Pla Cordero)	UN HCR 보호담당관
4	앨리스 프리디 (Alice Priddy)	무소속 전문가
5	헨리 무요 살라자르 (Henry Murillo Salazar)	라틴 아메리카 시민사회 단체 연합회 (RIADIS) 소속

○ 주요 발언

- 패널 1: 비렌드라 라즈 포카렐
 - 국가 차원의 모든 인도주의 법은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안에서 수용되어야 함. 중동과 같이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발언자가 소속된 '아빌리스재단'은 2015년부터 네팔 장애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이들이 인도주의적 법률의 수립 과정(예: 재난경험자 요구평가, 복구계획 수립 등)에서 대표성을 가지며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패널 2: 마사 이사벨 후타도 그라나다
 - 콜롬비아의 경우 2020년 등록 장애인이 130만 명으로 집계¹⁾되며, 이들 중 40만 명은 테러, 신체적 상해, 대인지뢰 등 전쟁과 관련한 장애를 겪음.
 - 현재 2025년까지 대인지뢰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국가위험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동 계획은 장애인의 특정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관리책을 포함함. 또한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종합 관리 방안 (Comprehensive Care Route)'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임.
- 패널 3: 리카르도 플라 코데로
 - 코로나 기간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 보고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됨: ① 무장집단으로부터의 폭력 및 불안, ② 망명신청, 구호 물자 수령 등에 대한 접근 불가, ③ 코로나 상황에서 요구충족 격차 ④ 통계치 부재
 - 상기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정보 접근성 개선, ②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부합한 망명법 개선, ③ 장애인 대표조직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 ④ 사회보호시스템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함.
- 패널 4: 엘리스 프리디
 - 코로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인의 취약성 및 사회성 배제를 더욱 심화 시킴.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분리 통계 구축 및 장애인단체(OPDs)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가 절실함.

1) Official Reco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 패널 5: 헨리 무요 살라자르
 -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15%로 추산되는 장애 인구의 유의미한 참여 없이는 국가 내 포괄적 평화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이를 위해 무력분쟁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영향에 대한 통계 구축과 더불어, 배상 신청 및 의견 개진을 위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

○ 자유참가 토론 주요 질의

- (질의) 팬데믹 같은 긴급상황, 인도주의적 응급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의 역할은?
 - ↳ (답변) 심리 보호막 제공,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 있음.
- (질의) 현존하는 통계 상 장애 인구를 15%로 추산,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서는 30%로 추산하는데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 ↳ (답변) 통계의 부재보다 잘못된 통계가 상황을 더욱 왜곡시킨다는 점을 반추하여 과대·과소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모집단 내 다양성을 대표하는 포커스 그룹을 활용해야 함. 또한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역 단위 장애인단체의 참여, 인도주의 기관 내 장애인의 포함 등이 고려되어야 함.

나. 원탁회의 2.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포용

○ 공동의장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립나 보닐라 (Libna Bonilla)	제14차 당사국회의의 부의장 / 과테말라
2	패트릭 푸겔로라스 (Patrick Fougerollas)	시민사회 대표 / 캐나다 '국제장애인네트워크개발프로세스(INDCP)' 창립단원 및 과학감독

○ 패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하이디 장 (Haidi Zhang)	'중국장애인연합회' 회장 및 중국 '국제재활회' 회장
2	하비에르 토레스 (Xavier Torres)	에과도르 장애 및 노인 국가 자문위원 및 '국가장애인평등위원회(CONADIS)' 위원장
3	피코 말라마키 (Pirkko Mahlamäki)	핀란드 장애포럼 사무총장 겸 유럽장애포럼 집행위원
4	알라코스 시에자 (Alarcos Cieza)	WHO 장애팀 심의관
5	알베르토 바스케즈 (Alberto Vasques)	페루 '사회및장애(SODIS)' 회장

○ 주요 발언

- 패널 1: 하이디 장

- 장애인의 완전한 자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는 ① 재활서비스의 제공, ②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③ 경제적 권한부여 등이 있음.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내용으로는 ① 240만 이상의 장애인에게 보조 장치 제공, ② 600만 가구에 무장애 환경 조성, ③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에 장애 이슈를 결합하여 생활수당 및 활동보조지원금 제공을 통한 장애인 700만 명의 빈곤 해소 등이 있음.
- 중국은 특히 성별과 장애의 중복 차별을 겪는 장애 여성 및 소녀에 집중하여 최근 여성장애인을 테마로 한 '사랑과 보살핌(Love and Care)'이라는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UN 에스캅과 UN Women, RI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의 진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시함.

- 패널 2: 하비에르 토레스

- 현재 자립생활에 관련한 논의가 도시 생활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는데, 농촌과 같은 다양한 장소도 고려되어야 함. 농촌의 경우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포함될 기회가 도시보다 대체로 더 많이 주어지며, 도시의 경우 접근성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이와 같은 공동체 내 연결성과 접근성 모두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함.

- 패널 3: 피코 말라마키
 - 유럽 장애계는 시설화 트렌드가 만연해 있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에만 최소 143만 명의 장애인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음.
 - 이에 당사국에 제안하는 바는 ①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논의에 (예: 기후변화 논의) 장애인단체의 자문을 얻을 것이며, ②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인 공공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바람.
- 패널 4: 알라코스 시에자
 -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는 UN의 프로그램에서조차 관심 밖의 논의였지만, 코로나 유행 이후 세계가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협약 19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상승함.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등 지역사회 참여 배제로 비롯된 경제적 위기가 장애인이 여지껏 처해있던 사회경제적 현실을 비장애인 및 대중에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음.
 - 이러한 집단적 인식을 활용하여 차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과정에서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방안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패널 5: 알베르토 바스케즈
 -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의료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권리 침해와 서비스 접근 같은 기타 욕구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음.
 - 정신건강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천은 아직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조차 부족하게 편성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자유참가 토론 주요 발언

- (질의) 유럽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전략(2021-2030)²⁾’을 신규 론칭 하였음. 동 전략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포함을 위해 혁신적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데, 이 중 인공지능,

²⁾ European Commission, “The Strategy for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

IC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됨. 이에 대한 좋은 사례 및 견해 공유를 요청함.

- ↳ (답변) 탈시설화를 위한 국가 단위 전략과 액션플랜의 출현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ICT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 사항이 많음. 현재 장애, 성별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월등하게 높으므로, ICT라는 해결책은 아직 미래적 대안으로만 남아있음.
- (질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가 지방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 ↳ (답변) 장애인이 참여하는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협력하면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

다. 원탁회의 3. 교육권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통합교육과 접근성의 어려움

○ 공동의장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사르하드 파타 (Sarhad Fatah)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주유엔이라크대표부
2	루스 워릭 (Ruth Warick)	시민사회 대표 / 국제청각장애인연합회 회장

○ 패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타몬 히로시 (Hiroshi Tamon)	변호사, 대학 강사 및 일본 청각장애인 이중언어 교육학교 이사
2	매리 세이어스 (Mary Sayers)	호주 '장애어린이및장애청년(CYDA)' 최고 경영자
3	아테나 크리티쿠 (Athena Kritikou)	그리스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사회적책임협회(SKEP)' 설립자 및 이사회 회장
4	빅토리아 매닝 (Victoria Manning)	뉴질랜드 IDA 포용교육 태스크 팀 WFD 대표
5	로라 시메나 (Laura Ximena)	학생 및 콜롬비아 'Asdown Colombia' 옹호자

※ 패널 3의 경우 기술문제로 인해 발언이 불어로만 진행되어 해석 불가

○ 주요 발언

- 패널 1: 타몬 히로시

- 변호사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으로서 느꼈던 2차, 3차 교육 장벽에 대한 개인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 학생을 위해 합리적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 정부의 의무사항을 상기함.
-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과 자막 이용을 이용하기 위한 ICT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중언어(구어+수어) 교육자 양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패널 2: 메리 세이머스

- 발언자가 속한 NGO가 장애 학생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³⁾ 응답자 700명 중 82% 이상이 코로나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며, 이후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 2차 설문 진행 시 72%의 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학습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배제를 겪었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호주의 교육이 통합교육보다 분리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드러냄. 호주 당국은 복선형 학제를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협약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인권옹호자인 발언자의 입장에서 이는 통합교육의 저해요소로 판단됨. 향후 코로나의 교훈을 통해 교육정책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패널 4: 빅토리아 매닝

- 청각장애인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수어를 사용하는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학구적·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 이에 이중언어 사용 학교와 수어를 활용하는 교사가 확충되어야 하며,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어를 통해 일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패널 5: 로라 시메나

- 발언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 결과⁴⁾ 지적장애 학생들이 코로나 대응 조치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콜롬비아 지적장애 학생의 35%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함.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³⁾ CYD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nd University of Melbourne (2020. 3.)

⁴⁾ "Conclusions Including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Post-COVID-19 Recovery Process", 웹사이트(<https://inclusion-international.org/>)에서 전문 확인 가능

교육의 배제뿐만 아니라 또래들과의 고립과 분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임.

○ 자유참가 토론 주요 발언

- (질문) 전자기기 구입이 불가하거나 및 인터넷 환경의 제한된 장애 학생은 온라인 교육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 (답변) 디지털 빈곤(Digital poverty)로 인해 ICT 접근 격차가 발생함을 인지하며, 장애인을 위한 ICT 접근성 보장이 교육정책 내 포함되도록 로비활동을 전개해야 함.
- (WFD 참석자 의견 개진) 코로나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수어 통역이 주목받았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교육 인력이 통역사로 투입되어 교육의 단절이 일어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되,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수어 외 적절한 정보 전달 수단(예: 폐쇄자막 등)을 혼용해야 함.

라. 협약 이행 당사국, 유엔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 자유참가 토론

○ 의장: 주카 살로바라((Jukka Salovaara)

○ 패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분류
1	아나 마리아 메넨데스 (Ana Maria Menéndez)	UN EOSG 정책 선임 고문	UN 기구 소속
2	리우쩌민 (Liu Zhenmin)	UN DESA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3	일즈 브랜드 케리스 (Ilze Brands Kehris)	UN OHCHR 사무차장	
4	길리언 트릭스 (Gillian Triggs)	UN HCR 부고등판무관	
5	헨리에타 포어 (Henrietta Fore)	UNICEF 전무이사	
6	아사 레그너 (Asa Regner)	UN Women 전무이사	
7	올라 아부알하이브 (Ola Abualghaib)	UN PRPD(유엔장애인권리파트너십) 기술 사무국 관리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분류
8	로즈마리 케이스 (Rosemary Kayess)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협약의 주요 이해 관계자
9	제럴드 퀴 (Mr. Gerald Quinn)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10	마리아 솔리다드 (Ms. Maria Soledad Cisternas)	장애 및 접근성 특별대사	
11	마티아스 덕 (Mathias Duck)	파라과이 ILEP 나병환자 자문위원회 위원장	

○ 주요 발언

- 발언자: 아나 마리아 메넨데스 (사무총장 비서실, 이하 UN EOSG)
 - 이번 해는 UN 장애포괄전략(이하 UNDIS⁵⁾)가 이행된 지 2년째 되는 해임. 올해 65개 UN기구가 본 전략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작년에 비해 15% 향상된 수치라 고무적임. 향후 UNDIS가 장애인의 고용 및 인적 자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 UN을 넘어 기업 및 기타 기관에도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함.
- 발언자: 리우쨌민 (UN 경제사회부, 이하 UN DESA)
 - UN DESA는 UN 내 장애 이슈의 포컬 포인트로서 역할하며, 지난 2020년 5월에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장애포괄적 코로나 복구를 위해 UN 파트너십을 론칭하였음. 파트너십 계획의 일환으로, UN 시스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코로나 및 장애 관련 글로벌 지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또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였음. 연구 결과는 올해 말 UN 사무총장의 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제출될 예정임.
- 발언자: 일즈 브랜드 케리스 (UN 인권고등판무실, 이하 UN OHCHR)
 - UN OHCHR은 UN 파트너십과 UN Women의 협조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장애인이 통계, 정보 제공, 국제 대응 등 이슈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를 요청하며, UN OHCHR이 신규 론칭한 ‘지역사회 2030⁶⁾(Community 2030)’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을

⁵⁾ United Nations Disability Inclusion Strategy (2020~)

⁶⁾ 장애인이 건강, 음식, 교육, 고용 등에서 지역사회 지원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한 UN OHCHR의 프로세스

촉구함.

- 발언자: 길리언 트릭스 (UN 난민기구, 이하 UN HCR)
 - UN HCR은 장애를 겪는 난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팟캐스트와 왓츠앱 같은 정보통신 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올해 목표는 장애인 난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임. 또한, 진정한 장애포괄성을 위해 장애인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는 5개년 실행계획을 최근 신규 채택하여, ID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행할 계획임.
- 발언자: 헨리에타 포어 (UN 아동기금, 이하 UNICEF)
 - UNICEF는 작년 동안 144개국에 걸쳐 220만 명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의료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82만 6천명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함. 또한 원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재해지역에 살고 있는 152,000명의 아동에 디지털 보조장치를 지원하고, 휴교 중인 네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제공함.
- 발언자: 아사 레그너 (UN 여성기구, 이하 UN Women)
 - UN Women은 2020년 3월 다양한 여성 지도자, 여성 운동가들과 온라인 미팅을 개최하여 여성장애인의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다양한 지식 산물을 산출하였으니 UN Women의 홈페이지기에서 참고 바람. 또한 현재 성별과 장애 등 복합적 양상의 차별을 다루는 교차적 접근 관련 글로벌 툴킷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향후 UN 프로그램에서 적극 활용 바람.
- 발언자: 올라 아부알하이브 (UN 장애인권리파트너십, 이하 UN PRPD)
 - UN PRPD는 현재 UN Women과 협력하여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44개 국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코로나 이후 복원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또, UN PRPD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일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임. 현재 UNDP와 함께 네 번째 국가 펀딩을 진행하려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함.
- 발언자: 로즈마리 케이스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 최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걸쳐 계속 언급되는 주제는 배제와

기 웹페이지: <https://www.unwomen.org/en?>

소외임. 이는 코로나 19 전염병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되고 가시화 되었으며, 향후 '더 나은 재건'을 통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임.

- 발언자: 제럴드 킨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 특별보고관으로서 첫 번째 비전과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제시하며 장애인권리협약과 SDGs에서 나타난 장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이 이 맥락과 상통하고 있다고 사료됨.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인도주의 법에 대한 교각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를 모색하는 것임.
- 발언자: 마리아 솔리다드 (장애 및 접근성 특별대사)
 - 장애 및 접근성 특별대사로서 맡은 업무의 두 가지 주축은 ① 봉사활동과 캠페인 진행(예: 장애아동을 위한 10가지 원칙)과 ② 장애의 인권기반 모델이 범분야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에 기반하여 현재 반(反)따돌림 프로젝트, 여성 및 소녀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 지뢰 희생자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특별대사의 웹페이지⁸⁾를 참고 바람.
- 발언자: 마티아스 덕 (파라과이 ILEP 나병환자 자문위원회 위원장)
 - 한센병 환자가 코로나 검사, 치료 및 백신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사례들을 공유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배제와 고립을 겪어왔던 한센병 환자들이 향후 '더 나은 재건'의 이행 과정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함.

마. 폐회 및 의장단 성명문 발표

- 의장: 주카 살로바라(Jukka Salovaara)

⁸⁾ 웹페이지: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resources/special-envoy-of-the-secretary-general-on-disability-and-accessibility.html>

○ 의장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함
1	립나 보닐라 (Libna Bonilla)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과테말라
2	사르하드 파타 (Sarhad Fatah)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주유엔이라크대표부
3	마테우즈 사코위츠 (Mateusz Sakowicz)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주유엔폴란드대표부
4	무하비 룡구 (Muhabi Lungu)	제14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 주유엔잠비아대표부

○ 성명문 주요 내용

- 코로나는 장애인의 취약성과 위험을 노출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과 불평등 상황을 악화하여 의료 지원, 경제적·사회적 지원, 피해 보상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배제 및 소외를 야기함. 협약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코로나 이후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 의장국 핀란드는 제13차 회기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두 번째 당사국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당사국회의 내 장애인과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을 도모함.

4

의결사항 (결의문 원문 붙임 참조)**가. 의결사항 1: 제15차 당사국회의 개최 장소 및 시기**

- 제15차 당사국회의 개최 일정 및 장소: 2022. 6. 14. ~ 16./ 뉴욕 유엔 본부

나. 의결사항 2: 제15차 당사국회의 개최 준비

- 사무총장에 제15차 당사국회의 개최를 위한 자원 및 지원 요청

다. 의결사항 3: 제14차 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송부 요청

- 모든 당사국과 참관인을 대상으로 제14차 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송부 요청

가. 회의 내용 관련

- 원탁회의 1: 무력분쟁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
 - 무력분쟁 및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 처한 장애인이 폭력을 채 피하지 못하거나, 가시화 되지 않아 인도주의적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회의에서 다수 제시됨.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취약성을 극대화 한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장애 여성 및 소녀들이 겪는 교차 폭력과 중복 폭력도 여러 차례 언급됨.
 - 이에 대해 패널과 자유토론 참가자들은 장애인단체와의 의미 있는 협력 및 역량강화를 가장 강조했으며, 보호지원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난민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 또한 괄시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언급함.
- 원탁회의 2: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포용
 -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비롯한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 및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더욱 배제됨. 코로나-19의 대유행 중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장애인의 시설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아 개선의 실마리를 제시함. 이에 재활서비스 및 보조기구 제공, 합리적인 주거환경 조성,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촉진, 지역사회 내 보호 및 고용의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 원탁회의 3: 교육권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통합교육과 접근성의 어려움
 -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인식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장애 학생을 위한 합리적 교육환경 조성(예: 이중언어 학교 확충, 수어를 활용한 일반교육 진행)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위한 ICT 접근성 강화 등이 논의됨.

나. 회의 진행방법 관련

- 온라인회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 고려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결과자료

- 온라인회의 개최로 물리적·공간적 장벽이 해소되어 발언자의 참여가 이전보다 원활해진바 다양한 참가자를 포괄할 수 있었음. 또한 CART(속기) 서비스 제공 및 별도 음성채널을 통한 통역 지원은 정보 접근성 부분에서 오프라인회의보다 발전된 형태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당사국회의가 온라인 형태로 개최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태(하이브리드)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모든 내용이 UN TV(UN 회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므로 정부대표단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관 가능할 것임.

6

관련사진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 2008년 5월 UN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 이후,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이 매년 유엔 뉴욕본부에 모여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 보고 및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 협약 가입국: 총 182개국* (대한민국 2008년 비준) * 2021. 6월 기준
- UN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 회의 이력

연번	회기	개최일자	연번	회기	개최일자
1	제1차 회기	2008. 10. 31.~11. 3.	8	제8차 회기	2015. 6. 9.~6. 11.
2	제2차 회기	2009. 9. 2.~9. 4.	9	제9차 회기	2016. 6. 14.~6. 16.
3	제3차 회기	2010. 9. 1.~9. 3.	10	제10차 회기	2017. 6. 13.~6. 15.
4	제4차 회기	2011. 9. 12.~9. 14.	11	제11차 회기	2018. 6. 12.~6. 14.
5	제5차 회기	2012. 9. 12.~9. 17.	12	제12차 회기	2019. 6. 11.~6. 13.
6	제6차 회기	2013. 7. 17~7. 19.	13	제13차 회기(온라인)	2020. 11. 30.~12. 3.
7	제7차 회기	2014. 6. 10.~6. 12.	14	제14차 회기(온라인)	2021. 6. 15.~6. 17.

※ 제13차(2020년), 제14차(2021년)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온라인 개최

붙임 1

의결사항(번역문)

결정안 최종본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1. 2021년 6월 15일에 개최된 제14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들이 채택되었다:

Decision 1: 제15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장소 및 시기

2.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총회 결의안 61/106호를 상기하고, 총회 절차 규칙 제1조의 1항과 2항을 참작하여 제15차 회의가 2022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것을 결정한다.

Decision 2: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를 위한 자원과 지원

3.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제14차 회의를 위한 자원의 제공과 지원 내역을 언급하며, 차기 제15차 회의 및 이후 회기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재차 권고한다.

Decision 3: 사무총장에 대한 제14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 송부 요청

4.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제14차 회의에 참가한 모든 당사국과 참관인에게 회의 보고서가 송부되도록 사무총장에 요청기로 한다.

Final text for action

Decisions by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1. At its fourteenth session held on 15 June 2021,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opted the following decisions:

Decision 1: Venue and timing of the fif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all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06,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rule 1, paragraphs 1 and 2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decides that its fifteenth session will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4 to 16 June 2022.

Decision 2: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es the provision of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four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and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to continue provide adequate support to the fifteenth and future sessions of the Conference.

Decision 3: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to transmit the report of the four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4.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cides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transmit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n its fourteenth session to all States Parties and observers.